



제420회국회(임시회)
제1차보건복지위원회

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검 토 보 고

■ 남인순의원 대표발의(의안번호 제5347호)

2025. 1.

보 건 복 지 위 원 회

수석전문위원 이지민

목 차

I . 개요	1
II . 주요 내용별 검토	2
1. 전자문서를 통한 환수금·연금보험료 등 독촉 근거 신설	2
가. 개정안의 내용	2
나. 검토의견	5
다. 관계 기관 의견	7

I. 개요

1. 남인순의원 대표발의안(의안번호 제5347호)

가. 제안경위

- (1) 제 안 자 : 남인순의원 등 10인
- (2) 제 안 일 : 2024. 11. 7.
- (3) 회 부 일 : 2024. 11. 8.

나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 따르면 국민연금공단은 납부 의무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연금보험료, 환수금 등의 납입 고지를 전자문서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.

그런데 연금보험료나 환수금 등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은 미납자에 대한 독촉의 경우 이를 전자문서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 종이문서에만 의존하고 있는 실정임. 반면, 건강보험의 경우 「국민건강보험법」에 따라 전자문서를 통한 독촉이 이루어지고 있음.

이에 국민연금 보험료 및 환수금 등의 독촉도 납부 의무자의 신청에 따라 전자문서로 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(안 제57조의2제3항 및 제95조제3항 신설).

Ⅱ. 주요 내용별 검토

1. 전자문서를 통한 환수금·연금보험료 등 독촉 근거 신설

가. 개정안의 내용

- 개정안은 환수금·연체금(이하 “환수금등”이라 한다)이나 연금보험료·연체금·체납처분비(이하 “연금보험료등”이라 한다)를 납부하여야 하는 의무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국민연금공단이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그 독촉을 전자문서로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.

현 행	남인순의원안
제57조의2(환수금등의 고지, 독촉 및 체납처분 등) ①·② (생략) <u><신설></u>	제57조의2(환수금등의 고지, 독촉 및 체납처분 등) ①·② (현행과 같음) ③ 공단은 납부 의무자의 신청이 있으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에 따른 독촉을 전자문서 교환방식 등에 의한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. 이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망에 저장하거나 납부 의무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에 그 납부 의무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본다.
③ (생략) 제95조(연금보험료 등의 독촉 및 체납처분) ①·② (생략) <u><신설></u>	④ (현행 제3항과 같음) 제95조(연금보험료 등의 독촉 및 체납처분) ①·② (현행과 같음) ③ 건강보험공단은 납부 의무자의 신청이 있으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독촉을

현행	남인순의원안
③·④ (생략) ⑤ 건강보험공단은 제4항에 따라 채납처분을 하기 전에 연금보험료 등의 채납내역, 압류 가능한 재산의 종류, 압류 예정 사실 및 「국세징수법」 제41조제18호에 따른 소액금융재산에 대한 압류 금지 사실 등이 포함된 통보서를 발송하여야 한다. 다만, 법인 해산 등 긴급히 채납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⑥ 건강보험공단은 제4항에 따른 국세 채납처분의 예에 따라 압류한 재산을 매각할 때 전문지식이 필요하거나 그 밖에 특수한 사정이 있어 직접 매각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「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(이하 “한국자산관리공사”라 한다)에 매각을 대행시킬 수 있다. 이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가 한 매각은 건강보험공단이 한 것으로 본다.	<u>전자문서교환방식 등에 의한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. 이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망에 저장하거나 납부 의무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에 그 납부 의무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본다.</u> ④·⑤ (현행 제3항 및 제4항과 같음) ⑥ -----제5항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 ⑦ -----제5항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
현행	남인순의원안
⑦ 건강보험공단은 제5항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매각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.	⑧ -----제6항----- ----- ----- -----.
※ 시행일: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	

나. 검토의견

- 현행법에 따르면 환수금등·연금보험료 납입의 고지는 전자문서로 할 수 있으나,¹⁾

환수금등(제57조의2)이나 연금보험료등(제95조)의 독촉은 이를 전자문서로 할 수 있는 근거가 명확하지 아니한 상황임.

- 이에 개정안은 환수금등·연금보험료등 납부 의무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국민연금공단이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그 독촉을 전자문서로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부 의무자의 편의를 증진하고 행정효율을 제고하려는 취지인 것으로 이해됨.

- 참고로, 「국민건강보험법」에서는 보험료와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징수금의 납입 고지뿐 아니라 독촉의 경우에도 전자문서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.²⁾

- 다만, 안 제57조의2제3항 및 안 제95조제3항은 ‘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망에 저장하거나 납부 의무자가 지정한 전자우편 주소에 입력된 때에 그 납부 의무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본다’고 하여 각각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,

연금보험료등의 납입 고지를 전자문서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

-
- 1) 「국민연금법」 제57조의2(환수금등의 고지, 독촉 및 체납처분 등) ① 공단은 제57조에 따라 환수금등을 징수하려면 기한을 정하여 환수금등의 금액 및 납부 기한 등을 적은 문서로써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. 이 경우 납입의 고지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문서로 할 수 있으며, 그 도달에 관하여는 제88조의2제3항을 준용한다.
제88조의2(납입의 고지 등) ② 건강보험공단은 납부 의무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 본문에 따른 납입의 고지를 전자문서교환방식 등에 의하여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. 이 경우 전자문서 고지에 대한 신청 방법·절차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- 2) 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81조의6(전자문서에 의한 납입 고지 등) ① 납부의무자가 제79조제1항에 따른 납입 고지 또는 제81조제1항에 따른 독촉을 전자문서교환방식 등에 의한 전자문서로 해줄 것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공단은 전자문서로 고지 또는 독촉할 수 있다. 이 경우 전자문서 고지 및 독촉에 대한 신청 방법·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
그 도달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제88조의2제3항³⁾을 준용함으로써 조문을 간소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.

- 참고로, 환수금등의 납입 고지를 전자문서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제57조의2제1항⁴⁾은 그 도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제88조의2제3항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

□ 한편 법제적 측면에서는, 안 제95조제3항을 신설하면서 종전의 제95조제6항 및 제7항의 주요 내용이 각각 제95조제7항 및 제8항으로 이동하게 되는바,

이를 반영하여 제95조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하고 있는 제57조의2제3항⁵⁾을 함께 개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생각됨.

3) 「국민연금법」 제88조의2(납입의 고지 등) ③ 건강보험공단은 제2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고지한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망에 저장하거나 납부 의무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에 그 납부 의무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본다.

4) 「국민연금법」 제57조의2(환수금등의 고지, 독촉 및 체납처분 등) ① 공단은 제57조에 따라 환수금등을 징수하려면 기한을 정하여 환수금등의 금액 및 납부 기한 등을 적은 문서로써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. 이 경우 납입의 고지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문서로 할 수 있으며, 그 도달에 관하여는 제88조의2제3항을 준용한다.

5) 「국민연금법」 제57조의2(환수금등의 고지, 독촉 및 체납처분 등) ③ 공단은 제2항에 따른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한까지 환수금등을 내지 아니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. 이 경우 체납처분과 관련하여서는 제95조제6항·제7항을 준용하고, “건강보험공단”은 “공단”으로 본다.

다. 관계 기관 의견

□ (보건복지부) 수정수용

- 개정안과 같이 환수금 및 연금보험료에 대한 독촉고지를 신청에 따라 전자문서로 받아볼 수 있게 되면 납부자의 편의가 제고될 것으로 예상되고, 전자고지 방식 허용에 따라 종이 사용이 줄어들면서 우편발송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되며,

‘4대보험 전자고지 활성화’에 따라 「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」(’22. 6.)과 「국민건강보험법」(’23. 5.) 등의 다른 법률은 이미 개정되어 독촉 전자고지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개정 필요성에 공감된다는 입장임.

- 다만, 조문 간소화 및 기존 조항(제57조의2제1항)과의 체계정합성을 고려하여 조문 내 구체적 기술 대신 기존 전자문서 고지 근거 조항(제88조의2제3항)을 준용하는 방안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이며,

법 개정에 따라 현행 제57조의2제3항(안 제57조의2제4항) 내 준용 조항이 현행 “제95조제6항·제7항”에서 “제95조제7항·제8항”으로 수정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.

문 의 처
02)6788-5510